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시행 2023. 7. 6.] [대통령령 제33618호, 2023. 7. 6.,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제정·개정문 전체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세율을 0.5퍼센트에서 0퍼센트로 인하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 전체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7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 ◎대통령령 제33618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2709.00의 세율(%)란 중 "0.5"를 "0"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